

전주지방법원 2016. 5. 25 선고 2016가단8888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5. 25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2,961,753원과 그 중 2,778,143원에 대하여 2015. 12. 23.부터 2016. 4. 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4. 2. 2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. 2. 26. 접수 제8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김성훈

별지